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71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23년 4월 19일
발 의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2. 12. 20.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(공동발의자 35명)하여 2023. 2. 9.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 제416호)을 심사한 결과, 본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그 내용을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사유

- 의안번호 제416호 개정안은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재난 또는 사고발생에 대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장의 안전관리 책무, 안전관리계획 수립, 자치구와의 협조·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.
- 그러나 개정안('22.12.20. 발의)과 동일한 취지의 「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다중운집행사안전관리조례”)가 이미 '22.12.30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두 조례 간 주요골자가 중복 및 충돌의 소지를 담고 있음.

- 따라서 유사내용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회피하면서 대규모 인원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현행 조례 제2조제1호 재난의 정의 중 ‘사회재난’의 범주에 “ 「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행사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”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사회재난의 범주에 다중운집에 따른 피해를 포함시킴(안 제2조제1호).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(「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 행사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 (대 안)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.</p> <p>2. ~ 1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(「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 행사 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</p> <p>2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